

## &lt; 수시 공시 &gt;

2012.2.2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 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| 구분 | 집합투자기구 명칭                   | 발생일<br>설정잔액(원) | 발생일<br>순자산총액(원) | 기준가격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 |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7호(채권혼합)      | 2,246,515,714  | 2,360,722,998   | 1050.84 |
| 2  |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(채권혼합)      | 3,652,605,324  | 3,854,040,995   | 1055.15 |
| 3  | 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<br>(채권혼합) | 1,242,108,212  | 1,257,952,551   | 1012.76 |

## 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## 3. 발생 일자 : 2012.2.25(토)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